전남대학교 창의융합학부 운영규정

[시행 2022.8.8] [전남대학교학교규정 제1903호, 2022.8.8, 제정]

전남대학교 061-659-6201

전남대학교 창의융합학부 운영규정

- **제1조**(목적)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창의융합학부(이하 "학부"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교육목표) 학부는 학생에게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는 융합형 교육을 실시하고, 인문학적?이공학적 소양을 겸비한 통섭능력을 배양시키며,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및 복합적 지식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와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미래 세대를 위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표로 한다.

제3조(조직 등) ① 학부에 학부 업무를 총괄하는 학부장을 둔다.

- ② 학부장은 전남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③ 학부의 학사관리 및 분담학생지도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책임지도교수를 두며, 전남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학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④ 학부의 행정지원 및 학사관리를 위하여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4조(교과이수) 학부 학생은 교양, 전공, 일반선택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5조(책임지도교수) 책임지도교수는 학생의 입학과 동시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(학과(부) 또는 전공 등) 학생은 1학년 수료 후 원하는 학과(부) 또는 전공을 선택하되, 관련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.

제7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학칙, 교학규정 등 학사 관련 규정을 따른다.

부칙 <제1903호,2022.8.8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